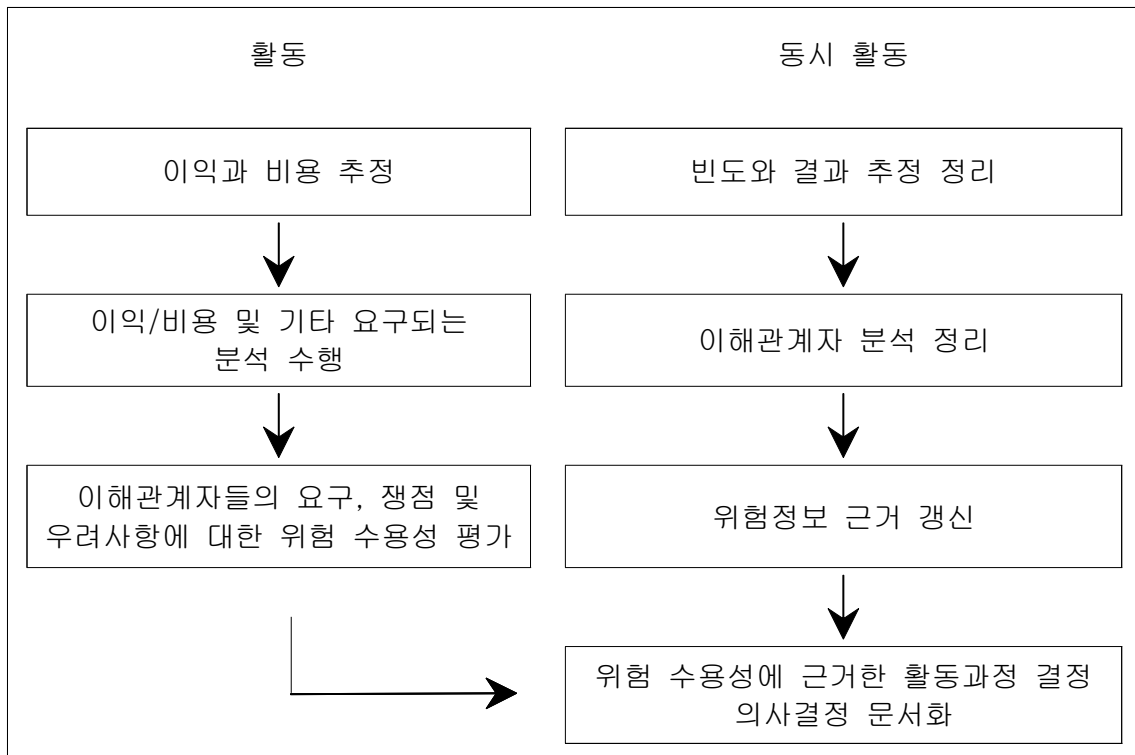


[별표 4] 위험평가(제21조 제4호 관련)



1.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쟁점 및 우려사항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다. 이 결과로 위험이나 위험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된다. 위험평가를 통하여 얻은 결정사항은 다음중 하나가 된다.
 - 가. 활동에 관련된 위험은 현재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
 - 나. 활동과 관련된 위험은 어떠한 수준에서도 수용 불가
 - 다. 활동은 수용가능하나, 이러한 활동은 관련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립 필요

2. 비행안전 확인의 한 가지 목적은 서비스수준의 종료나 감소가 항공안전에 수용하기 어려운 위험증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승인당국의 의사결정자에게 입증하기 위함에 있다. 즉, 의사결정자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만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사결정자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변화의 정도를 찾아야 한다.

3. 위험평가단계에서는 다음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 가. 위험과 관련된 제안사항의 효과가 추정되었는지 여부
 - 나. 제안사항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다른 비용들이 추정되었는지 여부
 - 다. 제안사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또한 수혜자가 누구인지라
 - 라. 비용-효과분석 및 다른 요구된 분석들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 마. 모든 가정과 불확실성들이 인지되고 문서화 되었는지 여부
 - 바. 위험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쟁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 사. 위험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